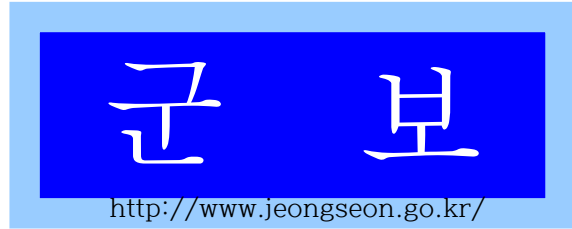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564호 2021. 5. 10. (월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21-66호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.....1
- 정선군 고시 제2021-69호 정선군 공영버스(정선~진부간) 운임 조정 결정(안).....3
- 정선군 고시 제2021-70호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.....5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.....12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1-66호

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증축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5월 7일

정 선 군 수

1. 위 치: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0-5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

나. 명 칭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공공청사_보건소) 증축사업(선별진료소)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 변경인가(㎡)	비고
	세부시설명	면적(㎡)		
공공문화 체육시설	공공청사	8,149	☐ 공공청사 A=8,149㎡(구역면적) ☐ 증축내용 ■선별진료소 A=100.16㎡	

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가. 성 명: 정선군수(정선군 보건소)

나. 주 소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

5. 사업기간

가. 착 수 일: 실시계획인가일

나. 준공예정일: 2021. 12. 31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
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◎ 편입 토지조서

순 번	위 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결정면적	증축면적	주 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
1	정선읍 봉양리	80-5	대	8,031	100.16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2	정선읍 봉양리	65-4	도	66	-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3	정선읍 봉양리	72-4	도	52	-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계		1필지		8,149	100.16					

정선군 고시 제2021-69호

정선군 공영버스(정선~진부간) 운임 조정 결정(안)

버스공영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선군 공영버스(정선~진부간) 운임 조정 결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1년 5월 10일

정 선 군 수

○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

(단위 : 원)

[illegible]

※ 시행일자 : 2021년 6월 1일

정선군 고시 제2021-70호

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5월 10일

정 선 군 수

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

개요 및 범위	사업명		사업유형	총사업비(억원)		사업기간
	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, 야생화마을 고한		일반근린형	271.1		2021 ~ 2024
	사업위치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		사업면적	186,416㎡	
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	정선군수, 도시재생지원센터, LH강원지역본부장, 주민					
사업 필요성	○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쇠퇴 이후 강원랜드, 하이원리조트 등이 개장했으나 고한읍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쇠퇴 가속 ○ 지역주민, 관, 기업 등의 상호간 협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성과,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전제된 계획수립 필요					
사업내용 및 효과	야생화 오즈로드 조성, 야생화 6차산업 육성, 마을호텔 18번가, 구공탄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 및 상권 활성화, 주거지 정비, 야생화 어울림센터 조성,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등					상세③ 참조
재원조달방안	국비, 지방비, 공공투자(공기업), 기금, 민간투자					상세⑤ 참조
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	야생화 오즈로드 조성 등 7개 사업					상세⑥ 참조

활성화
계획도



② 계획의 목표

비전	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, 마을! 꽃이 되다.
목표	목표1. 와글와글 야생화 골목상권 : 지역자원과 주민역량 활용한 지역특화 및 상권 활성화 목표2. 새록새록 야생화 삶터 : 노후주거지 정비, 주민 생활편의와 복지지원 확충 목표3. 도란도란 야생화 공동체 :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

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
가. 도시재생사업의 계획

단위사업명		세부사업명	주요내용
마 중 물 사 업	A 지역특화 및 상 권 활성화	A1 야생화 오즈로드	기존 탄탄대로 산책로 구간과 마을 골목길을 연결하고, 특화된 이야기와 볼거리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, 마을 간 이동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공동체 및 지역 활성화 도모
		A2 야생화 6차산업	야생화 수공예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민교육, 상품 개발, 판로개발 부문의 각 요소의 체계 수립
		A3 마을호텔 18번가	마을호텔 컨셉에 맞는 골목길 디자인, 경관개선과 방문객 편의시설 및 서비스 콘텐츠 발굴
		A4 구공탄시장 활성화	시장 내 먹거리, 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구공탄시장 내 방문객 유입 도모
	B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	B1 아름다운 삶터	주택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개선
		B2 안전 쾌적한 삶터	안전 환경 및 쓰레기 배출지 개선, 스마트 가로등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
		B3 행복한 삶터	지역 내 높은 고령자 비율을 고려, 건강케어 서비스, 여가활동지원, 생활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
	C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	C1 야생화어울림센터	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조성 (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, 문화예술거점 등 운영)
		C2 거버넌스&역량강화	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체계 구축, 지역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
D 지 자 체 사 업	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		야생화와 추리극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볼거리, 즐길거리 제공
	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		LED야생화 공예조명 설치, 쌈지공원 조성 및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
E 부 처 연 계 사 업	(행정안전부)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		마을호텔 사업과 연계하고, 야생화 연계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학습과 연구를 진행 중인 청장년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 공간 조성
F 공 공 기 관 사 업	(강원도경제진흥원) 폐공간 공간조성 및 창업지원 사업		야생화 관련 상품 판매, 관광객 및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

나.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

- 지역 정체성 확보 및 주민주도형 마을 활성화
- 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
-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
-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생활 인프라 개선

④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
(단위: 억원, m²)

종류	단위사업명	사업비	위치	면적(규모)	사업내용	비고
도로	야생화 산책로	10.52	12, 13리 일원	L=약 860m B=약 3m	13리 지장천 하천변, 마을 골목길, 12리 철로 옆 구간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주민 편의 및 관광 자원화 도모	
도로	야생화 빛의 거리	3.0	12리 고한로 상가거리	L=약 400m 구간	고한읍의 관문으로 야생화 마을의 상징적인 경관 요소 도입	
도로	골목길 정원 조성	13.88	신촌마을 및 18번가 골목길	신촌마을 1,381m² 18번가 2,605m²	마을 골목길 특화디자인 도입으로 보행친화도로 개선 및 쉼터, 공원 조성	
주차장	공영주차장 입체화	26.73	구공탄 시장 진입로	연면적 2,400m² 주차면 75면	2층 구조로 입체화함으로써 환경적 부하 최소화	
공동이용 시설	마을호텔 베이커리	3.16	고한리 91-22	2층(148m²) 증축 연면적 101m²	빵, 제과 등을 소재로 마을호텔 18번가 특산물 개발 판매	
공동이용 시설	구공탄 광장놀이터	2.80	구공탄시장 내	약 320m²	구공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내 광장 리모델링으로 가족 단위 고객 유치	
공동이용 시설	구공탄 음식공방	1.09	구공탄시장 내	약 38m²	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고 음식 특산물 개발로 시장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 기여	
공동이용 시설	돌봄지원센터	1.03	13리 마을회관	2층(124m²) 리모델링	지역 고령자 등의 건강, 정서 케어 지원 활동공간	
공동이용 시설	야생화 마실방	1.12	고한리 62-288	1층(62m²) 리모델링	야생화마실방 조성 및 노인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	
공동이용 시설	물한상회	2.07	고한리 137—1	1층(60m²) 신축	지역주민 생활편의 지원 및 특산물 판매 사업 공간 조성	
공동이용 시설	어울림센터 조성	18.76	고한리 96-17	3층 신축 연면적 320m²	18리 내 미사용 노후 건축물을 활용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	

⑤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

(단위: 억 원)

구분	단위 사업	세부사업		단계별 자원투입					비 고	
				계	기투입	21년	22년	23년		24년
합계				271.1	87.6	74.1	81.4	20.8	7.2	
마 중 물 사 업	소계			170.8	-	61.4	81.3	20.8	7.2	
	A 지역특화 및 상권활성화	A1 야생화 오즈로드	정선군 도시과	32.8	-	3.0	28.8	0.5	0.5	
		A2 야생화 6차산업	정선군 도시과	10.8	-	3.0	2.8	2.7	2.3	
		A3 마을호텔 18번가	정선군 도시과	31.9	-	8.9	23.0	-	-	
		A4 구공탄시장 활성화	정선군 도시과	10.4	-	7.8	1.6	0.5	0.5	
	B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	B1 아름다운 삶터	정선군 도시과	24.1	-	1.4	10.4	12.1	0.2	
		B2 안전 쾌적한 삶터	정선군 도시과	13.2	-	7.4	5.8	-	-	
		B3 행복한 삶터	정선군 도시과	10.3	-	4.9	4.4	0.6	0.5	
	C 공동체활성화 및 역량강화	C1 야생화어울림센터	정선군 도시과	27.7	-	21.2	2.2	2.2	2.2	
		C2 거버넌스&역량강화	정선군 도시과	9.6	-	3.9	2.4	2.3	1.1	
D 지 자 체 사 업	소계			94.3	81.6	12.7	-	-	-	
	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			56.1	56.1	-	-	-	-	
	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			38.3	25.6	12.7	-	-	-	
E 부 처 연 계 사 업	소계			5.0	5.0	-	-	-	-	
	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		행안부	5.0	5.0	-	-	-	-	
F 공 공 기 관 사 업	소계			1.0	1.0	-	-	-	-	
	폐공간 공간조성 및 창업지원 사업		강원도 경제진흥원	1.0	1.0	-	-	-	-	

[6] 예산집행계획

(단위: 억 원)

구분	단위 사업	세부사업		단계별 재원투입						비고
				계	기투입	21년	22년	23년	24년	
합계				271.1	87.6	74.1	81.4	20.8	7.2	
마 중 물 사 업	소계			170.8	-	61.4	81.3	20.8	7.2	
	A 지역특화 및 상권활성화	A1 야생화 오즈로드	정선군 도시과	32.8	-	3.0	28.8	0.5	0.5	
		A2 야생화 6차산업	정선군 도시과	10.8	-	3.0	2.8	2.7	2.3	
		A3 마을호텔 18번가	정선군 도시과	31.9	-	8.9	23.0	-	-	
		A4 구공탄시장 활성화	정선군 도시과	10.4	-	7.8	1.6	0.5	0.5	
	B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	B1 아름다운 삶터	정선군 도시과	24.1	-	1.4	10.4	12.1	0.2	
		B2 안전 쾌적한 삶터	정선군 도시과	13.2	-	7.4	5.8	-	-	
		B3 행복한 삶터	정선군 도시과	10.3	-	4.9	4.4	0.6	0.5	
	C 공동체활성화 및 역량강화	C1 야생화어울림센터	정선군 도시과	27.7	-	21.2	2.2	2.2	2.2	
		C2 거버넌스&역량강화	정선군 도시과	9.6	-	3.9	2.4	2.3	1.1	
D 지 자 체 사 업	소계			94.3	81.6	12.7	-	-	-	
	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			56.1	56.1	-	-	-	-	
	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			38.3	25.6	12.7	-	-	-	
E 부 처 연 계 사 업	소계			5.0	5.0	-	-	-	-	
	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		행안부	5.0	5.0	-	-	-	-	
F 공 공 기 관 사 업	소계			1.0	1.0	-	-	-	-	
	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지원 사업		강원도 경제진흥원	1.0	1.0	-	-	-	-	

㉞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

가. 성과관리 체계구축

- 정선군 도시재생 전담조직,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사업 이해관계자 및 참여조직 간 협력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구축
- 조사방법 및 시기 : 성과지표에 따라 주민과 상인,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, 통계조사,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연 1회 조사

나. 모니터링 및 관리 절차

- 계획수립 : 평가지표 및 평가의 내용·방법·대상·시기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
- 실행 및 결과분석 :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직접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·분석
- 결과활용 :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각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위한 피드백 실시

㉟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: 해당없음

㊱ 관련서류 열람

-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30일간
- 열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
- 관계서류 : 열람장소에 비치
- 기타 승인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(033-560-24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1-587호

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

2021년 5월 10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-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위원 자격을 정함(안 제3조)
 - 정선군의회의원.
 - 공인회계사, 세무사.
 -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.
 -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.
-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상향 조정(별표1)
 - 수당 : 1일 100,000원 ⇨ 150,000원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: 2021. 5.10 ~ 5.29 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9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회계과장)에게 제출 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- 주소 : (우 26132)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수(회계과장)
- 전화 : 033-560-2271
- 팩스 : 033-560-2272

-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 등

- 붙임 가. 의견서 제출서식 1부.
나.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다. 관계법령 발췌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정선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☐ 의 건 제 출 자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개 정 안	찬성여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조례 제 호

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의회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정선군의회의원
2.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
3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4.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<u>의회</u> 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</u> ----- ----. ----- -----. 1. <u>정선군의회의원</u> 2. <u>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</u> 3. <u>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u> 4. <u>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

[별표 1]

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(제1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금 액	비고
일비	금150,000원(금일십오만원)	
여비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“별표 5” 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.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.7.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2.29., 2013. 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2조(결산 승인)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6.1.12.>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

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<신설 2016.1.12., 2017.7.26.>